

포항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6년 6월 8일 / 포항시장

나. 회부일자 : 2026년 6월 8일

다. 상정일자

○ 제330회 포항시의회(임시회)

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(2026. 6. 18.) 상정 . 질의답변 . 토론 .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 : 이은주 노인장애인복지과장)

가. 개정사유

-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이동권 및 자립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수단으로, 고장 시 신속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상생활 전반에 중대한 불편이 발생함
- 현행 조례는 연간 수리비 지원 한도 외에 회당 지원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, 단일 수리에 고액이 소요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제한되어 일부 비용을 장애인이 자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
- 이에 연간 지원 한도는 유지하면서 회당 수리비 지원 한도 규정을 삭제하여 수리비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 휠체어 등 이동보조기기는 장애인의 이동권 및 자립생활과 직결되는 필수 수단으로, 합리적인 수리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함
- 아울러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라 조문 내 행위 주체와 절차를 명확히 하고, 문체·용어를 정비하며 불필요한 반복 표현을 삭제하여 조례의 이해도와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○ 수리비용 지원기준 정비 (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)

- 현행

- 수급자·차상위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(단, 1회당 15만원 초과할 수 없다)
- 일반 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(단, 1회당 10만원 초과할 수 없다)

- 개정

- 수급자·차상위 장애인 : 연간 30만원 이내(단, 1회당 15만원 초과할 수 없다)
- 일반 장애인 : 연간 15만원 이내(단, 1회당 10만원 초과할 수 없다)

※ 연간 지원 한도는 현행과 동일하며, 회당 지원 한도 규정만 삭제

○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조문 정비

- 조문 내 용어 및 문체를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

- 수리하고자 하는 자 → 수리하려는 사람

- 행정절차상 행위 주체를 명확히 하고, 사실 확인 중심으로 정비

- 검토 → 확인, 송부 → 보고·제출·지급

다. 관련법령

○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경희)

- 본 조례안은 장애인 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수리비 지원 한도 규정을 삭제하여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,

○ 종합검토 결과

- 「장애인·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기기 지원 활용촉진을 위한 책무를 정하고 있으며, 같은 법 제7조와 제8조에서 보조기기 지원과 교부와 관련된 사업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, 조례의 개정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.
- 기존 조례는 연간 지원 한도 외에 회당 지원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여, 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자부담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, 수리비 회당 지원 한도 규정을 삭제하여 연간 한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임.
- 기타 부분은 조례의 명확성과 집행력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으로, 본 개정조례안은 검토 결과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의 요지 : 생략

5. 토론의 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